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8. . . (제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8. . .

1. 의결주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율성을 보다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문·일임업자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중 부실업자의 경우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가능 업종 확대(안 제14조의5제1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가능한 업종을 현행 중소기업창업법 지원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방식에서 이 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하고,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일반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나.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유지 요건 강화(안 제23조제1호)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대해 최소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의 판단주기를 현행 매 회계연도말에서 매 월말로 단축하고, 최저 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1년이 아닌 6개월로 축소함.

다. 국공채에 대한 분산투자규제 완화(안 제80조제1항제3호의2)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하씩 분산투자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채 등의 경우 100분의 30, 지방·특수채 등의 경우 100분의 10 이하씩 투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

라.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 허용(안 제99조제2항제5호자목)

투자일임업자가 연기금 또는 공제 등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계열회사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및 의결권 교차행사 등은 금지함.

마.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방식 다양화(안 제100조제2항)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보고서 교부방식을 전자우편 이외에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함.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한도 규제완화 대상 확대(제118조의17제3항)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한도를 높게 적용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범위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모집에 최근 2년간 5회 이상 투자하고, 최근 2년간 누적 투자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사람을 추가함.

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최소자기자본 요건 완화(안 제271조의2제3항)

주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함.

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유지 요건 강화(안 제271조의3제1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최소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의 판단주

기를 현행 매 회계연도말에서 매 월말로 단축하고,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1년이 아닌 6개월로 축소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1.0 ~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하는 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하는 자(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금융 및 보험업

나. 부동산업

다.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라. 무도장 운영업

마.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바. 그 밖에 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23조제1호 중 “매 회계연도말”을 “매 월말”, “회계연도말”을 “월말”, “다음 회계연도말”을 “해당 월말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제80조제1항제3호의2 중 “100분의 5 이하씩”을 “100분의 5(영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영 제8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10) 이하씩”으로 한다.

제99조제2항제5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른 기금 또는 제10조제3항제13호에 따른 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의 행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112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결권의 행사. 이 경우 “신탁업자”는 “투자일임업자”, “신탁재산”은 “투자일임재산”, “신탁계약”은 “투자일임계약”으로 본다.

2) 제삼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사실상 1)에 해당하는 의결권의 행사

제100조제2항의 각 “전자우편”을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한다.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증권의 사모에 관한 중개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5회 이상 투자한 사람으로서 그 누적투자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사람

제271조의2제3항 중 “20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271조의3제1호 중 “매 회계연도말”을 “매 월말”, “회계연도말”을 “월말”, “다음 회계연도말”을 “해당 월말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별표3 3-14-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4-1	전문사모집 합투자업	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법 제249조의2 에 따른 적격투자자	10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유지요건의 적용례) 제23조제1호 및 제271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등록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자의 투자한도 등에 대한 특례) 투자자가 최근 2년간 온라인 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한 누적투자금액에 대하여 제118조의17제3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백만원 이상인 사람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만원 이상인 사람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2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p> <p>1. (생략)</p> <p>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하는 자. 다만,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하는 자(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u> ----- ----- -----.</p> <p><u>가. 금융 및 보험업</u></p> <p><u>나. 부동산업</u></p> <p><u>다.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u></p> <p><u>라. 무도장 운영업</u></p> <p><u>마.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u></p> <p><u>바. 그 밖에 다수의 일반투자</u></p>

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② (생략)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생략)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

-----.

1. -----

----- 매 월말-----
----- 월말-----
----- 해당 월말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2. (현행과 같음)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

-----.

1. ~ 3. (생략)

3의2.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가. (생략)

나.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할 것.

3의3. ~ 12. (생략)

② ~ ⑪ (생략)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 ~ 3. (현행과 같음)

3의2. -----

가. (현행과 같음)

나. -----

----- 1
00분의 5(영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영 제8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씩 -----

3의3. ~ 12. (현행과 같음)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생략)

② 법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법 제98조제2항제9호다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아. (생략)

<신설>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업자가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른 기금 또는 제10조제3항제13호에 따른 법인 및 이에 준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의 행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112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결권의 행사. 이 경우 "신탁업자"는 "투자일임업자", "신탁재산"은 "투자일임재산", "신탁계약"은 "투자일임계약"으로 본다.

제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등) ① (생략)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일반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제99조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보낼 수 있다.

③ (생략)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소득 등

2) 제삼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사실상 1)에 해당하는 의결권의 행사

제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

-----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
-----.

③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 1.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나. (생략)

<신설>

다. (생략)

- 2. (생략)

④ ~ ⑦ (생략)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① ~② (생략)

③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④ ~ ⑪ (생략)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법 제249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

-----.

- 1.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증권의 사모에 관한 중개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5회 이상 투자한 사람으로서 그 누적투자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사람

라. (현행 다목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10억원-----.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

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생략)

-----.

1. -----

----- 매 월말-----
----- 월말-----
----- 해당
월말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연 락 처	(02) 2100 - 2662